

의안 번호	제3569호
----------	--------

## 김포시 노후준비 지원 조례안

### 1. 심사경과

- 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25년 1월 31일 유매희 의원, 이희성 의원
- 나. 회 부 일 자 : 2025년 2월 10일
- 다. 상 정 일 자 : 2025년 2월 18일
- 라. 의 결 일 자 : 2025년 2월 18일

### 2. 제안이유

- 「노후준비 지원법」 제3조 제1항에 근거하여 김포시민의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 생활을 위하여 노후준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.

### 3. 주요내용

- 가. 조례의 목적 및 정의 (안 제1조 ~ 제2조)
- 나. 노후준비 지원사업 및 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 (안 제3조 ~ 제4조)
- 다. 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 위탁 및 노후준비협의체 구성 (안 제5조 ~ 제6조)

### 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### 5. 토론요지 : 생략

### 6. 수정안의 요지 : 없음

7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8. 소수의견의 요지 : 생략
9. 주문사항 : 없음
10.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: 없음

# 김포시 노후준비 지원 조례안

**제1조(목적)** 이 조례는 「노후준비 지원법」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김포시민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위해 노후준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정의)**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노후준비”란 노년기에 발생할 수 있는 빈곤·질병·무위·고독 등에 대하여 사전에 대처하는 것을 말한다.
2. “노후준비서비스”란 개인이 신체적·정신적·사회적·경제적인 영역 등 모든 영역에서 적절한 노후준비를 할 수 있도록 재무·건강·여가·대인관계 등 분야별로 노후준비 진단, 상담, 교육, 관계기관 연계 및 사후관리 등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.
3. “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”란 노후준비 관련 정보 제공, 홍보, 상담, 교육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시설을 말한다.

**제3조(노후준비 지원사업)** 김포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김포시민의 생애주기 노후준비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.

1. 노후준비에 대한 인식 제고
2. 노후준비 실태에 대한 조사·연구·교육 및 통계생산
3. 노후준비서비스 제공 및 프로그램 개발
4. 노후준비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시스템 등의 구축·운영
5. 노후준비서비스에 대한 홍보 및 협력
6. 그 밖에 시민의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준비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**제4조(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)** ① 시장은 「노후준비 지원법」 제10조 제1항에 따라 김포시민의 노후준비에 필요한 사업을 직접 수행하거나, 김포시가 출연하거나 경비를 지원하는 법인 또는 출자·출연 기관,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법인, 사회복지시설 또는 사회복지관 등을 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로 지정·운영할 수 있다. 이 경우 시장은 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를 복수로 지정·운영할 수 있다.

② 시장은 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**제5조(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 위탁)** ① 시장은 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의 효율적인 관리·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노후준비 교육 및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라 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의 절차 및 방법 등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 「김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」를 준용한다.

③ 시장은 수탁기관에 위탁한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**제6조(노후준비협의체 구성)** ① 시장은 「노후준비 지원법」 제10조 제2항에 따라 노후준비서비스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 간의 협력을 위하여 김포시 노후준비협의체를 구성·운영할 수 있다.

② 김포시 노후준비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.

1. 노후준비 진단 및 상담 지원 협의
2. 노후준비 교육 지원 협의
3. 재무, 여가, 건강, 대인관계 등 모든 영역별 노후준비서비스 지원을 위한 체계 구축

4. 그 밖에 노후준비에 필요한 기관 간 협력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역할
- ③ 시장은 노후준비협의체의 효율적인 관리·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관련기관 및 단체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